



#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개정(2000년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종전과 달리되거나 새로 신설된 내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아동복지법시행령(2000년 7월 27일 공포)

#### - 대학에 재학중인 시설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제11조)

- 종전에는 대학재학중인 시설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퇴소시켰으나,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시설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아동은 특별한 경우(고등학교 재학 등) 외에는 만 18세 도달시 퇴소함.

####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제3조)

-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도모함.
- 아동용품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놀이시설물과 아동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설치·제작·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함.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제4조)

-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또한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을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제14조 내지 제18조)

-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 각 시·도에 설치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긴급전화에는 특수번호(1391)를 부여하여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하며, 신고접수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운영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시·도지사는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함.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의뢰함. 3일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의뢰함.

□ 아동복지법시행규칙(2000년 8월 22일 공포예정)

－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 폐지(제7조)

- 종전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하였으나, 시설의 장이 학업, 질병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퇴소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 도입 및 규모 축소(제10조·제11조)

- 아동복지업무의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재산요건이 종전 3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축소되는 등 시설의 소규모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도 축소(30인→10인)함.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조정(제13조)

-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일시적인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설된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육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함.

□ 아동보호체계구축 세부추진내용

－ 긴급전화 설치·운영

- 전국단일 특수번호 도입(1391):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통화가 가능한 전국단일 특수번호를 도입하며, 시·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16개소)에 개소당 4회선을 설치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지정) 운영(16개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및 시·도별로 1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또는 지정)·운영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1년부터 설치·운영 예정이며, 아동현황, 아동학대 건수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추진함.
- 설치기준 및 지정요건: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 배치·운영(8시간 3교대)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등을 마련해야 하며, 긴급한 현장출동을 위한 차량을 확보하며,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본래의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한함.
- 예산지원은 2000년의 경우 아동보호체계 수행에 필요한 예산 중 긴급전화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2001년부터 긴급전화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노사 반반씩 부담-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대상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2002년 7월 시행)하고, 경제불황시 급여액이 급격히 하향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월액을 직전연도 평균소득월액에서 직전 4년간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며, 적립기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영상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을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 1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보험료를 노사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당연 적용 제외대상이 현행 23세 미만의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 제외)로 확대됨으로써 정기적인 납부예외신고 및 관리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됨.
- 또한, 보험료 납부기한이 1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어 체납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압류재산 매각시 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를 3월 초과 임금채권과 같은 순위로 상향조정하여 연금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가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됨. 반면,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시 신용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65세)이 없어져 연금수급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급여지급이 정지되는 연령을 6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단축하여 60세 이후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밖에도 채권시가 평가제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이 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서 자산종류별 장기시장수익률로 변경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근로능력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규칙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실제소득에서 경로연금·장애수당·아동양육비·지속적인 의료비 등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제2조).
  - ※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소득 이 외의 일반근로소득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실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범위, 재산가액, 소득환산대상 재산 및 소득환산율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재산의 범위는 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재산 등으로 하고, 그 가액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함.
  - 소득환산 대상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시가를 적용한 금액에서 기초재산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함(2003년부터 시행).
- 조건부 생계급여의 급여중지 기간을 3월로 하고, 급여중지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제7조)하도록 함.
- 주거급여 중 임차료를 월세임차료 지급과 전세자금 대여로 구분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유지수선비를 지급(제8조 내지 제11조)함.
  - 월세임차료는 상·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주택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의 50%를 지급함.
  - ※ 소득환산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까지는 임차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월세임차료지급기준을 마련 시행함.

- 전세자금의 대여는 국민주택운용계획(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기존 전세자금 대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유지수선비는 점검 또는 수선을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제공하되,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를 가능하도록 함.
- 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함(제12조 내지 제26조).
- 지역간 균형배치를 위해 자활후견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및 방법 개발 등을 담당할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둠(제27조 내지 제29조).
- 긴급급여는 생계급여를 최장 2개월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업무를 이관하거나 거주지 이전 등 급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41조).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6개월 시행결과

보건복지부는 2000년 8월 9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시행결과를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난 6개월(2월 9일 ~ 7월 31일) 동안 총 846명의 장기기증자로부터 987명에게 장기이식이 시행됨.
-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총 768건으로 신장이 400건, 간장은 156건, 그리고 골수는 212건이 이루어졌음. 이 중 657건이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간 기증이며, 비혈연간 장기기증은 111건임.
- 뇌사자 장기기증은 그 동안 32명이 발생하였으며, 32명의 장기기증으로 총 142명에게 146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짐. 신장 58명, 간장 19명, 심장 6명, 신장과 췌장의 동시 이식 4명, 각막 47명에게 기증되었으며, 또



한 심장상태가 좋지 않았던 뇌사자 심판막과 췌도세포도 각각 2명에게 이식되었음.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 뇌사자 1인당 4.5개 이상의 장기가 이식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의 뇌사자 장기활용도가 뇌사자 1인당 장기이식이 3.5건이었던 과거에 비추어 장기등이식에 관한법을 시행으로 장기이식관리업무가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됨으로 인하여 고귀한 장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 사망자의 장기이식은 각막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46명으로부터 각막 사후기증을 받았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약 1,900명의 각막이식 대기자들과 연락하여 의학적으로 각막이식이 가능한 최종 이식대상자 77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새로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골수이식과 관련하여 2만여 건의 골수기증자 정보를 검색하여 의학적으로 골수이식이 가능한 조건인 인간백혈구항원(HLA) 6개가 모두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 총 212명에게 골수 이식수술을 받도록 하였음.

－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총 6,268명으로 신장 2,886명, 각막 1,956명, 골수 670명, 간장 546명, 심장 102명, 췌장 68명, 폐 40명임. 이는 지난 2월 9일 까지의 2,804명에 비하여 약 123.5%가 증가한 수치로서 하루에 약 20명이 장기이식대기자로 신규등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8개의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에 93개 기관이 있고,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는 54개 의료기관이 있음.
- 장기이식의료기관 중에서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뇌사자의 장기상태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출을 담당하는 장기 적출의료기관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뇌사자의 뇌사판정을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 6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한편,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2월 9일 개소 이래 기증 장기의 신속하고 공정한 배분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장기기증절차 등 장기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홈페이지([www.konos.go.kr](http://www.konos.go.kr))를 개설 운영중임.

## 재진료, 원외처방료 조정

8월 9일 『의약분업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 결과와 8월 10일 발표한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한다. 이로서 평균 6.5% 인상 효과가 있으며, 총 소요재정은 5946억원(보험자부담 4162억원, 본인부담 1784억원)이다. 지역의보재정은 국고 지원, 직장과 공교재정은 적립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재진진찰료: 1,000원 인상(치과계, 한의계 제외)함.
  - 의원: 4,300원→5,300원, 병원: 3,700원→4,700원
- 의료기관 원외처방료: 의원 기준 종전 대비 1,092원 인상(의원급 종별 가산을 제외시 고시금액 950원 인상)하며, 주사제 처방료는 의원 기준 종전 대비 920원 인상(의원급 종별 가산을 제외시 고시금액 800원 인상)함.
- 약국 조제료 조정: 6세 미만 소아 조제시 기본조제기술료에 200원 가산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조제투약시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30% 가산함.
- 치과 소아가산율 및 대상 항목 조정: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 20% 가산하고 대상 행위가 8개 항목이던 것을 30% 가산하고 대상 행위를 11개 항목으로 확대함.
- 선별적으로 보험급여하여 왔던 소아 암환자에 대한 조혈모세포이식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보험급여 인정함.
  - 신경아세포종: 1세 이상이면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Stage IV 또는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Stage III의 종양일 때,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 유잉씨육종: 재발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Germ Cell Tumor: 재발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 율름씨 종양: 재발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